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1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6월 2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13년 7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2건을 동일개정사항으로 일괄상정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존치 필요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2건의 조례가 일괄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한만료 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20 호
----------	---------

제출연월일 : 2013.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기금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5.30 ~ 6.19,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미반영)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4조의 2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3 을 “제4조의3”으로 한다.

제4조의 4를 “제4조의4”로 하고 각 호의 외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부외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제4조의 5 을 “제4조의5”로 한다.

제4조의 6 을 “제4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을 “1명”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03조”를 “제9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요항목인 장·관·항의”를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로 한다.

제8조의 2 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9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예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매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총소요금액을”를 “총 소요 금액을”로 한다.

제2조의 2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조의 2제1항제2호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의 2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요항목인 장·관·항의”를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3조의 2 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

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과”를 “1명과”로 “1인을”을 “1명을”로 “9인”을 “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자로”를 “각 호의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의 2제3항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 2제5항 중 “잔입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 3을 “제3조의3”으로 한다.

제3조의 4를 “제3조의4”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제3조의 5을 “제3조의5”로 한다.

제3조의 6을 “제3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을”를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의 2를 “제4조의2”로 하고 본문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인에”를 “1명에”로 “2인이내로”를 “2명 이내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한하여 1년의 범위안”을 “한정하여 1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상환기간내에도”를 “상환기간에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p>
<p>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p> <p>2. (생략)</p> <p>〈신설〉</p>	<p>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각 호에-----.</p> <p>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p> <p>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용도) ----- -----.</p> <p>1. ----- ----- 그 밖의 -----</p>

2. 삭 제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 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2. (생 략)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생 략)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

2. 삭 제

3. 그 밖에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계좌-----

-----.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

② ----- 1명과 ----- 1
명을 ----- 9명 -----
-----.

③ -----
----- 각
호의 사람으로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사람 -----
-----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제4조의 3(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략)

제4조의 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 4 (생략)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 5(위원회의 운영) ① ~ ②(생략)

제4조의 6(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활용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② (생략)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남은
기간-----.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위원회의 기능) -----
--- 각 호의 -----.

1. ~ 2. (현행과 같음)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회의에 부치는 -----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6(간사 및 수당) ①-----
----- 1명을 -----
-----.

②-----
----- 범위에서-----
-----.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94
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각
호의 -----.

1. (생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 2(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해당-----

3. 그 밖에 -----

② ----- 따라 ----- 회계연도마다 -----.

③ -----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

-----.

제8조의2(기금의 결산) ----- 회계연도 -----

-----.

제9조(준용) -----

대해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u>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u> ----- ----- -----.</p>
<p>제2조(기금구성) ①<u>서울특별시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u> 	<p>제2조(기금구성) ①<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 ----- ----- ----- <u>각 호의</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탁</u>----- --
<p>②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u></p>	<p>② ----- ----- <u>회계연도마다</u> ----- ----- <u>총 소요금액을</u> ----- -----.</p>
<p><u>제2조의 2(기금의 운용계획)</u></p> <p>①<u>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u></p>	<p><u>제2조의2(기금의 운용계획)</u></p> <p>①----- <u>회계연도마다</u> ----- ----- ----- <u>각 호의</u> -----</p>

한다.

1. (생략)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생략)

-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조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④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

3. 그 밖에 -----

 - ② ----- 따라 -----
----- 회계연도마다 -----

-----.
 - ③ ----- 주요항목
인 정책사업의 -----

-----.

제2조의 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
----- 계좌 -----
-----.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 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2. (생략)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생략)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 3(위원장의 직무) ① ~ ②(생략)

제3조의 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4. (생략)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
-----.

② ----- 1명과 ----- 1명을 ----- 9명 -----.

③ -----
----- 각 호의 사람으로 -----.

1. ~ 2. (현행과 같음)
3. -----
----- 사람 -----
-----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

- 남은기간 -----.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4(위원회의 기능) -----
----- 각 호의 -----.

1. ~ 2. (현행과 같음)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 5(위원회의 운영) ① ~ ②(생략)

제3조의 6(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청결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 2(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 2. (생략)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4. (생략)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5. 그 밖에 -----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6(간사 및 수당) ① ----- 1명을 -----

② ----- 범위 -----

제4조의2(기금의 결산) ----- 회계연도 -----

제5조(대여대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교육부장관 ----- 사람을 -----

제6조(대여제한대상) ----- 각 호에 -----

1. ~ 2. (현행과 같음)
3. ----- 사람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되는 자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 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생략)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생략)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공제 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

----- 사람

제7조(대여회수 제한) -----
----- 각호를 -----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에 -----
----- 2명 이내로 -----
-----.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
선-----.

③ -----

----- 한정하여 1년의 범위-
-----.

④ ----- 따라 -----
상환기간에도-----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
----- 각호에 -----

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생략)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사람이 -----
2. ----- 사람이 -----
3. ----- 사람.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채권보전) ① -----

----- 1명 -----
----- 1명 -----
-----.

② 제1항에 따라 -----

-----.

③ 그 밖에 -----
----- 모든 -----
-----.